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 근거 마련〉
■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709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2. 제안일자 : 2025년 4월 10일

3. 회부일자 : 2025년 4월 11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Ⅲ. 검토의견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다자녀 출산 및 양육 장려를 목적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 특별승격 기회를 부여하고(안 제13조의5 신설),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차등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3조의5(특별승격) 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u><단서 신설></u>	제27조(정년) ① ----- ----- 다만, <u>자녀가 2명 이상인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
<u><신설></u>	<u>1. 자녀가 2명인 경우: 61세</u>
<u><신설></u>	<u>2. 자녀가 3명인 경우: 62세</u>
<u><신설></u>	<u>3.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63세</u>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60세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연령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연령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년 적용 대상 공무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사이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6월 30일자로, 7월에서 12월에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12월 31일자로 공직에서 예외 없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¹⁾.

다만, 예외적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가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제3항²⁾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³⁾에 따라 존재하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하여 그 수가 많지 않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다자녀양육자,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2)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있으나⁴⁾, 현재 외무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는 다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승진 우대나 정년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약 8천명, 합계출산율 0.03명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출생아 수는 약 23만 8천명,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20 ~ 2024년)>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²⁾
출생아 수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43
합계출산율 ¹⁾	0.84	0.81	0.78	0.72	0.75

주: 1)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 2024년도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이러한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국가경쟁력 저하,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악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출산 및 양육 장려 정책이 요구됨.

특히, 외무공무원은 국외출장 및 재외공관으로의 잦은 인사발령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4)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많으며, 이러한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정년 연장, 특별승격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통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승진, 정년 등 인사상 우대조치의 기준으로 자녀의 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 외에도 불임이나 건강상 문제 등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자녀가 없거나 적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⁵⁾,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승진, 정년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⁶⁾을 고려할 때, 개정

5)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차별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생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안이 당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중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외무공무원은 전체의 약 84.8%임.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직급별 자녀 수 현황>

구분	합계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합계	962	638	178	130	16	0
5등급	519	337	91	81	10	0
4등급	286	163	74	44	5	0
3등급	157	138	13	5	1	0

※ e사람 시스템 등록 기준(2025.8.31. 현재)

둘째, 자녀의 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자녀의 수는 출이나 입양에 따른 증가 및 사망이나 과양에 따른 감소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권 보유 여부에 따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 국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인사정책 추진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위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관련 법률안 현황>

(의안번호 순)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소관 상임위
1	국가공무원법	제2209706호	2025. 4. 10. / 2025. 4. 11.	행정안전위원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209707호		국회운영위원회
3	지방공무원법	제2209708호		행정안전위원회
4	경찰공무원법	제2209710호		행정안전위원회
5	소방공무원법	제2209711호		행정안전위원회
6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09712호		정보위원회
7	군무원인사법	제2209714호		국방위원회
8	교육공무원법	제2209715호		교육위원회
9	군인사법	제2209716호		국방위원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외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정년 연장’에 있어 정년 연령은 사회경제적 여건(평균수명, 실업률 등) 및 공무원 조직 내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승진 우대’에 있어서는 자녀가 없거나 적은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70